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세율, 세액의 계산 등 - 법제205조 내지 제207조, 규칙제87조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종전의 농지세의 세율과 변동이 없으며, 농지소득세액의 계산 및 안분 및 소액부징수(2,000원 미만)에 대한 내용도 변동이 없다.

○ 신고·납부, 결정·징수 - 법제208조·제209조, 영제154조·제155조, 규칙제89조

농업소득세에서는 종전의 농지세에서 규정하고 있던 중간신고 및 중간예납제도와 특별징수제도를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신고와 납부에 번거로움만 초래하여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시장·군수는 이를 2월말까지 확정하여 초과납부 세액은 환부하고, 부족세액은 징수하면 되는 것이며, 기타 2이상의 시·군에서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종전의 농지세의 경우와 같다.

○ 수시부과, 변경신고, 과세대장 등 - 법제210조 내지 제212조, 영제156조·제157조, 규칙제90조·제91조

농업소득세의 수시부과 및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농업소득세과세대장 등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세 규정과 같으나, 시설재배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 농지소득조사위원회 - 법제213조, 영제158조 내지 제160조, 규칙제92조·제93조
 종전의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로 하였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다.

○ 소득세의 부과금지 - 지방세법 제214조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